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정 2015. 02. 17. 규칙 제1364호
개정 2015. 11. 03. 규칙 제1396호
개정 2016. 11. 08. 규칙 제1428호
개정 2017. 07. 03. 규칙 제1440호
개정 2018. 01. 23. 규칙 제1456호
개정 2019. 04. 05. 규칙 제1481호
개정 2020. 05. 11. 규칙 제1512호
개정 2020. 08. 12. 규칙 제1547호
개정 2020. 12. 09. 규칙 제1554호
개정 2021. 06. 23. 규칙 제1586호
개정 2021. 08. 06. 규칙 제1588호
개정 2022. 02. 25. 규칙 제1602호
개정 2022. 10. 25. 규칙 제1621호
개정 2022. 12. 13. 규칙 제1625호
개정 2023. 12. 20. 규칙 제1644호
개정 2024. 10. 29. 규칙 제1658호
개정 2025. 05. 21. 규칙 제166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학칙에서 교육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대학원 학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우리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학과전공 및 정원) 학칙 제3조에 의한 대학원의 학과 전공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조직

제1절 직제

제4조(대학원) ① 대학원에는 대학원장과 각 전공별로 1인의 전공주임 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실을 둔다.

② 대학원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전공주임 교수는 대학의 학과장이 겸임하되, 학과장이 없는 전공은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대학원장은 대학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 ④ 전공주임 교수는 전공과 전반적인 학사업무를 총괄한다.

제2절 위원회

제5조(대학원위원회) ①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에는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각 전공주임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및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원 학칙 및 과정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사 운영

제1절 학기·수업·교육과정

제9조(학기 및 수업)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제, 야간제 및 계절제로 운영하고, 학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9.>

제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제2학기 : 9월 1일 ~ 익년 2월말

제10조(수업운영) ① 수업시간의 표시는 교시로 하며, 교시당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20.12.9.>

③ 계절제 수업의 경우 매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계절제 수업기간 이전에 출석수업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은 1일 6시간, 주당 2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11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의 변경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③ 개설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폐강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④ 개설 교과목의 수강인원이 15명을 초과할 경우 수강신청 인원을 제한하거나 분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제12조(평가) 각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매학기 강의 실시 기간 중에 적절한 시기에 행한다.

제13조(출석) ① 출석은 매 교시마다 담당교수가 점검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가 된다.

② 공무로 인한 결석자는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기간은 통산하여 수업일수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는 병·의원장의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의 5분의 1 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일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 ①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장은 매학기 개강 20일전까지 개설교육과정을 확정 공고한다.

제15조(교육과정 편성) ①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전공 단위로 편성하며, 전공필수 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2절 입학

제16조(입학자격)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단, 전공에 따라 입학자격을 달리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08.06.>

제17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계획은 전형일로부터 1개월 전에 확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0.12.9.>

제18조(선발방법) ① 대학원 입학생의 선발은 주간제, 야간제, 계절제로 구분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특별전형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9조(지원서류)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
3. 교원자격증 사본 1통(해당전공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20조(필답고사) ① 필답고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공과목에 대하여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② 출제 및 채점위원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1조(면접고사) ① 면접고사는 지원자의 학구적 태도, 전공에 대한 적성, 교원으로서의 자질, 교양과 예절, 인품 등을 심사한다.

② 면접고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이 실시하며 평가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특별전형) ① 특별전형 인원은 모집인원의 3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지원자에게는 필답고사를 면제하고 서류전형에 의한다.

제23조(합격자결정)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여부를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② 동점자 처리기준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③ 미등록자가 있을 경우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입학등록) ① 합격자로 확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を 취소한다.

제3절 재입학

제25조(재입학) ①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는 제적 또는 퇴학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재학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제적된 자는 제외한다.

②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절 수료 및 이수학점

제26조(이수단위 및 강의시수) ① 각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3학점으로 한다.

② 전임교원 1인별 최대 강의시수는 계절제, 야간제, 주간제 각각 학기당 7학점 이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초과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개정 2021.08.06.>

제27조(수료 및 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6학점 이내에서 타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초등특수교육 및 학습행동전문가 전공과 초등상담교육 전공의 수료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여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삭제<개정 2023.12.20.>

③ 석사학위과정생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이수할 수 있다.

④ 학위논문대체과정은 석사학위과정수료자로서 학위논문대체과정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상담교육 전공은 학점 추가 이수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제5절 등록금

제28조(수업연한 경과후의 등록금) 수업연한 경과 후 취득해야할 학점에 대해 수강신청을 하는 자는 수강신청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6학점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납부한다.

제29조(휴학생의 등록금) 등록기간 종료 전에 휴학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등록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할 수 있다.

제30조(복학생의 등록금) 휴학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휴학시 등록금 미납 복학자는 복학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재입학생의 등록금)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재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절 공개강좌

제32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84조에 의하여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 활동

제33조(원우회 설치) ① 학칙 제90조에 의하여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의욕 고취 및 자치 능력 배양을 위해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원우회장 및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③ 원우회 회장 및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대학원장에게 통보한다.

④ 원우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4조(원우회비) ① 원우회장은 원우회 운영을 위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우회 경비는 원우회 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징수 및 집행한다.

제2절 장학

제35조(장학금) ① 대학원 학생으로서 학력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전공주임교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학칙 및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15.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및 제16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별표1>, 제16조<별표2>, 제27조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및 제16조 <별표2>의 어린이영어융합교육 전공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선발한다.

부칙(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 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제16조 <별표2>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제16조 <별표2> 개정규정은 2021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2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 및 202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수료자에 대하여 이 규정 제27조 제4항을 적용한다.

부칙(2024.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1>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전공들은 202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 기초학력과 문해력전공

2. 아동미술교육전공
3. 발명·메이커교육전공
4. 기초학력·학습·행동 지도 전문가전공

<별표 1> <개정 2020. 5. 11.>, <개정 2020. 12. 9.>, <개정 2021. 6. 23.>, <개정 2022. 10. 25.>,
 <개정 2024. 10. 29.>, <개정 2025. 5. 21.>

학과 및 정원

학 과	전공	운영(수업방법)	정 원
초등교육학과	초등윤리교육	계절제	201명
	기초학력과 문해력		
	초등수학교육 및 수학영재교육		
	융합과학과 영재교육		
	스포츠교육		
	아동음악교육		
	아동미술교육		
	진로체험교육		
	초등정보·로봇		
	오르프교육		
	건강레저		
	발명·메이커교육		
	교사전문성과 학교문화		
	유아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교육학		
	기초학력·학습·행동 지도 전문가		
	사회과교육과 다문화교육	야간제	
	어린이영어융합교육		
	초등상담교육		
	유아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건강레저	주간제	
상담심리			